

[별표2]

자가 보유여부 판단기준(제2조제19호, 제10조제1항제2호 관련)

1. 부대장은 자가 보유여부 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거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자에게 가족관계증명서, 세목별과세증명서(미과세 확인용) 등 주택 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간부숙소 입주자는 무주택 서약서 제출로 갈음한다.
2. 부대장은 주거지원을 받는 사람이 자가 보유자로 적발 시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(등기부등본) 등 주택 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음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, 가목과 나목의 처리일자가 다른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 - 가. 등기부 등본 : 등기접수일
 - 나. 건축물대장등본 : 처리일
3. 자가 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. 단, 해당 여부는 주거지원을 신청하는 자가 증빙서류 제출을 통하여 증명해야 하고, 부대 주거지원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해당여부를 결정한다.
 - 가.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였을 시 상속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을 처분한 경우
 - 나. 국토부 「최저주거기준」 [별표]의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총주거면적 미만인 전용면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. 다만,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자가 보유자로 본다.
 - 다.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「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」에서 정한 건축물의 용도가 오피스텔이며, 업무용으로 사용 중임을 세목별과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통해 입증한 경우. 단, 주거용 오피스텔은 제외한다.
 - 라.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된 경우, 재개발/재건축 등의 사유로 자가 거주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(사업시행인가 이후)
 - 마.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
 - 바.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「주택법」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